# 김 해 도 시 관 리 계 획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01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o 지난 2004년과 2014년 김해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정비 이후, 집단 취락지구로의 건축물 이전 및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절토지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변경 등 그 간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그에 수반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에 해당하며, 그 실시근거는 <표 1.2.2-1>과 같음.

<표 1.2.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o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나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일부 해제하기 위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이에 대한 협의 권한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7조제1항18호와 관 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됨.

#### 1.3 계획의 추진경위

o 2019. 04. 09. : 용역착수

o 2020. 12. ~ 2021. 0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1.4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o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나. 계획시행자

o 김 해 시

#### 다. 승인기관

o 용도구역변경(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경상남도

o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 김 해 시

#### 라.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o 기준년도 : 2019년

o 목표년도 : 2021년

2) 공간적 범위

o 위 치 : 김해시 내 개발제한구역 일원

- 집단취락 : 김해시 진영읍 서천마을 일원(1개 지역)

- 단절토지 : 김해시 내 개발제한구역 일원(7개 지역)

- 경계선 관통대지 : 김해시 대청동 802-5번지 일원(2개 지역)

o 해제면적 : 77.860㎡

#### <표 1.4-1> 공간적 범위

구 분	해제면적(㎡)	용도지역 계획	해제유형	비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77,860 (10개소)	주거지역 : 6개소 녹지존치 : 4개소	집단취락 : 1개소 단절토지 : 7개소 관통대지 : 2개소	

#### 마. 계획의 개요

-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 o 상기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해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해제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집단취락 1개소, 단절토지 7개소, 관통대지 2개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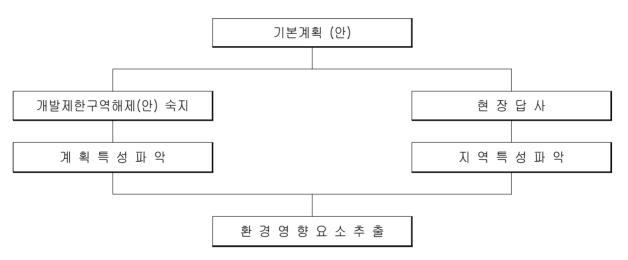
<표 1.4-2>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일련 번호	위치	해제면적 (m²)	용도지역 계획	해제유형	비고
À	10개소	77,860	주거지역 : 6개소 녹지존치: 4개소	집단취락 : 1개소 단절토지 : 7개소 관통대지 : 2개소	
1	진영읍 우동리 695-6 일원	27,130	제1종일반주거지역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서천지구)
2	대청동 519 일원	5,320	자연녹지지역	단절토지	
3	관동동 796-1 일원	4,340	자연녹지지역	단절토지	
4	이동 479-2 일원	8,860	자연녹지지역	단절토지	
(5)	화목동 1584 일원	6,770	제1종일반주거지역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화목지구)
6	대동면 예안리 377-2 일원	3,190	제1종일반주거지역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마산지구)
7	대동면 초정리 952-468 일원	18,150	자연녹지지역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안막지구)
8	대동면 대감리 897-5 일원	3,040	제1종일반주거지역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감내1지구)
9	대청동 614 일원 (9필지) (상점지구변)	670	제1종일반주거지역	관통대지	지구단위계획 (상점지구)
10	대청동 802-5 일원 (2필지) (아랫상점지구변)	390	제1종일반주거지역	관통대지	지구단위계획 (아랫상점지구)

# 제 3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3.1 환경영향요소 추출

- o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기 위한 대상지역 선정은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함.
- o 환경영향요소란 개발의 시행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계획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계획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사 및 운영 단계별로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그림 3.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절차

<표 3.1-1>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요소

구 분	공 사 시	운 영 시
환경영향요소	<ul> <li>생태계 변화</li> <li>지형 변화</li> <li>토사운반</li> <li>토사유출</li> <li>공사인부 투입</li> <li>공사장비 가동</li> <li>구조물 공사</li> <li>폐기물 발생</li> </ul>	· 토지이용 변화 · 오수 발생 · 폐기물 발생

#### 3.2 평가항목의 설정

o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 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환경부지침"을 비교·검토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함 (<표 3.2-1> 및 <그림 3.2-1> 참조).



<그림 3.2-1> 중점평가항목 설정 흐름도

<표 3.2-1> 평가항목의 설정

구 분	검토항목	중점검토항목	비고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수질)	<ul> <li>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li> <li>지형 및 생태축 보전</li> <li>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li> <li>수환경의 보전(수질)</li> </ul>	
생활환경의 안정성	∘ 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 ∘ 소음·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 ∘ 소음·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가.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o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가 요구되는 항목의 세부내용은 <표 3.2-2>와 같음.

#### <표 3.2-2> 검토항목 세부내용

구 분	항 목	설 정 사 유	주요 검토사항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식생 훼손 및 동·식물상 변화가 예상	○ 사업시행 전·후의 식물상의 변화 예측 ○ 동·식물의 서식지 차단, 훼손여부 및 영향 및 대책
TI OI	지형 및 생태축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 지형단면의 변화 예측 및 대책
자 연 환경의 보 전	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운영시 계획대상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ul><li>계획시행에 따른 경관상의 변화 예측</li><li>및 저감방안 수립</li></ul>
	수환경의 보 전 (수 질)	<ul> <li>계획대상지 주변지역 공사시 토사유출</li> <li>로 인한 주변 수계로의 영향이 예상</li> <li>비점오염물질 발생에 의한 주변 수계로</li> <li>의 영향이 예상</li> </ul>	• 토사 유출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분뇨)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
	대 기 질	<ul><li>공사시 장비투입 및 발생토공량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예상</li></ul>	<ul><li>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대기오 염물질에 의한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 감방안</li></ul>
생 활 환경의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 향 예상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 향예측 및 저감대책
안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효율성	<ul> <li>공사시 건설폐기물, 폐유 등의 발생이 예상</li> <li>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이 예상</li> </ul>	·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성상별 처리대 책 검토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 감방안

# <표 3.2-3> 평가항목의 제외사유

검토항목	제외항목	제외사유	
	악 취		
생활환경의 안정성	온실가스	<ul><li>계획수립에 따른 미치는 영향 없음.</li><li>향후 개별 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시 검토</li></ul>	
	토 양		
사회·경제	인구 및 주거	• 계획수립에 따른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과의 조화성	산 업	· 향후 개별 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시 검토	

# 3.3 평가예측 방법 설정

o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에 사용된 기법, 관련자료 등은 <표 3.3-1>과 같음.

<표 3.3-1> 환경영향예측 및 분석기법

구 분	항 목	예측 및 분석기법	자료 및 근거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ul> <li>기존문헌·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li> <li>로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li> <li>예측</li> </ul>	, , , , , , , , , , , , , , , , , , , ,
자 연 환경의	지형 및 생태축보전	<ul><li>계획대상지 표고·경사분석, 지질도</li><li>기존문헌·자료조사로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상의 변화 예측</li></ul>	∘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도 ∘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 전	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영향	•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도
	수환경의 보 전 (수 질)	<ul><li>수질 문헌조사</li><li>계획시행시 토사유출 검토</li></ul>	∘ 문헌조사 ∘ 원단위산정
	대 기 질	<ul><li>대기질 문헌조사</li><li>계획대상지 주변의 주거지로의 영향 분석</li></ul>	∘ 문헌조사 ∘ 건설표준품셈(2020, 국토교통부)
생 활 환경의 안정성	소음·진동	∘ 소음진동 문헌조사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을 거리감쇠식 등에 의해 예상	<ul> <li>문헌조사</li> <li>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국립환경연구원)</li> <li>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I~Ⅱ, 국립환경연구원 (1992)</li> </ul>
	자원·에너지 순환의효율성	<ul><li>유사사례 및 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li></ul>	<ul><li>2018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li><li>(2020, 환경부)</li></ul>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계획설명서

# 제 4 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o 본 행정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함.

#### 4.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며, 법적근거, 구성대상 등은 <표 4.1.1-1>에 제시함.

#### <표 4.1.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 분	내 용
법 적 근 거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6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2013.01.01)
구 성 대 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협의회 구성 제외 가능 (시행령 제8조)
구 성 주 체	<ul> <li>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li> <li>※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기관의 장이 구성·운영</li> </ul>
협의회 구성방법	○ 관련전문가, 협의기관 공무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이내
협의회역할	<ul> <li>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할 대안의 종류, 중점 검토항목, 항목별 세부 내용 및 검토 방법 등을 심의하여 결정</li> <li>대상 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 및 특성, 입지 여건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li> <li>평가 항목 결정 시 아래 사항을 고려(법 제11조, 제2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ol> <li>해당계획의 성격</li> <li>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li> <li>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li> <li>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li> <li>1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li> </ol> </li> </ul>

#### 4.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o 심의안건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o 심의위원 위촉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 외 7인(위원장 포함)

o 협의회개최여부 : 서면심의

#### <표 4.1.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위원장	김해시 도시계획과	과 장	이 🔾 용	소속기관
위 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과 장	박 〇 진	협의기관
"	김해시 수질환경과	과 장	황 🔾 철	소속기관
"	김해시 기후대기과	과 장	이 ○ 언	소속기관
"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 수	윤 〇 복	협의기관 추천
"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조교수	정 〇 식	민간전문가
"	자연과 미래	회 장	최 〇 영	시민단체
"	장유2동 상점마을	총 무	노 〇 성	주민대표

#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표 4.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협의회위원	심 의 의 견	드
박○진	<ul> <li>** 총괄의견</li> <li>o 동 계획은 김해시 개발제한구역내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에 대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li> </ul>	
	<ul> <li>※ 심의의견</li> <li>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li> <li>o 대상지역은 계획수립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 야 함.</li> <li>o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해당 계획별로 사업개요, 관리계획(안), 변경사유,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현황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포함) 등을 제시</li> </ul>	
	2. 토지구상안  o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 국토환경성평가1·2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Ⅰ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Ⅱ등급이면서 생태·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식생보전등급 Ⅱ등급 이상 지역,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이면서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지역, 각 보호구역 인근의 완충지역  - 생태적 연결성(능선, 녹지축 등)이 단절된 우려가 있는 지역(7부 능선 이상 지역)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대안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 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방법 등	

협의회위원	심 의 의 견	비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 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유관기관 활용 등	
박○진	6. 기 타  o 동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협의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o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미반영시 그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o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ul> <li>* 총괄의견</li> <li>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 토하여 적정한 대안 및 저감방안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li>※ 심의의견</li> <li>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li> <li>o 대상지역의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 야 함.</li> </ul>	
황○철	2. <b>토지이용구상안</b> o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o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향후 해당부지의 개발로 인한 환경적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서식지 및 자연식생 변화 여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협의회위원	심 의 의 견	비고
황○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o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27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 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전까지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시 지역개발부하량의 잔여량이 부족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할당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이⊝언	** 총괄의견  o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대안 및 저감방안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li>* 심의의견</li> <li>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li> <li>o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 야 함</li> </ul>	
	2. 토지이용구상안 ㅇ -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별 장단점 비교, 평가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최종 선정안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o 사업시행 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o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야 함.	

협의회위원	심 의 의 견	비고
윤○복	<ul> <li>* 총괄의견</li> <li>o 본 계획의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적정성 등 부합 여부</li> <li>등을 검토하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li> </ul>	
	<ul> <li>※ 심의의견</li> <li>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li> <li>o 본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지역에 있어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에 따른 설정 범위는 타당하다고 판단됨</li> </ul>	
	2. 토지이용구상안 o 용도지역은 현재의 토지이용 및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계획비교' 측면에서 대안의 선정은 적정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o 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제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의 세부평가항목으로 적정하게 선정하였으며, 범위 및 방법이 적정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 생략은 적정하다 고 판단됨.	
	6. 기 타 o 개발과 보전의 조화 등 효율적 계획 수립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정○식	* 총괄의견  o 김해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인 부산광역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 대기관리권역 중에서도 신중히 검토해 야할 대기질 관련 사항이 많음. 따라서 본 사업관련 대상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개발과정에서 의 발생 가능한대기질 진단 및 예측에 있어서의 대기질 영향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질 관련 '검토항목 세부내용'에 있어서의 실질적 평가내용에대한 세심한 검토가 향후 요망됨.	
	<ul><li>※ 심의의견</li><li>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li><li>○ 별도 의견 없음.</li></ul>	
	2. <b>토지이용구상안</b> o 별도 의견 없음.	

협의회위원	심 의 의 견	비고
정○식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별도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본 평가대상과 관련된 변경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기질 관련 중점관리로서의 중요 평가대상은 아님. 하지 만, 김해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대도시인 부산광역시와 바로 인접하여 있어, 대기관리에 있어서의 세심한 검토가 특별히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본 평가준비서에 기술된 대기질 관련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 및 방법이 거의 전무함. 해당 사업지역들에서의 대기질 관련 검토사항은 개발성격상 '공사시'에 발생가능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진단과 예측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사시'의 진단 및 예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모델의 선정,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부지기상자료의 확보여부 등)에 관한 내용기술이 전무함. 따라서 향후 본 평 가에 있어서의 실질적 충분한 영향평가 수행으로 신뢰할만한 보고서 도출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심한 보완 및 검토가 요망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ㅇ 별도 의견 없음. 6. 기타	
	o 별도 의견 없음.	
최○영	** 총괄의견  o 김해시는 산림의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11도) 제한 조례까지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특례조항을 근거로 산림지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본 지역들은 김해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정비 이후 자연녹지역 존치, 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 등 여러 목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향후 환경 및 자연환경과 생태 등의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김해의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를 함에 있어서개발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산림지역과 수변, 습지 지역은 반드시보호되어야 한다.  o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고,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협의회위원	심 의 의 견	비고
최○영	<ul> <li>※ 심의의견</li> <li>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li> <li>o 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주변 시설물 및 지형 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직·간접적인 영향권역)하고, 입지 특성 및 계획의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의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함</li> <li>o 항목별 평가대상 선정근거에 따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함</li> <li>o 동식물상 조사지역은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대상지역은 하천정비 대상 하천 상중하로 구분하여 계획 소하천 경계로부터 1000m까지 조사범위로 선정하여 실시한다.</li> <li>o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측면에서 생태축의 훼손은 절대 없어야 한다.</li> </ul>	
	2. 토지이용구상안  o 사업예정지는 전체 지역 해제면적이 77,860㎡으로 일부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18,520㎡), 일반주거지역( 59,340㎡)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 면적이 더 많은 바 사업시행 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용도변경 예정 지 및 주변지역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근 산림 및 하천 훼손은 최소화하고, 하천부지 내 녹지를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o 본 용도 변경지역은 인근 주거지역과 농경지가 인접하여 있으며 주변지역시 설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 산림지역은 가급적 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함  o 사업지구 내 야생동물 보호구역 훼손에 대한 공사시 공사지구로 부터의 소음 및 대기질 영향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해당지역 인근에는 자연녹지지역과 주거단지 및 농경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보전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o 동·식물상  -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동·식물상 조사('15. 하절기에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동·식물상 조사시 문헌(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에 의해 사업지역과 인접 지역에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정밀조사 실시  - 자연환경현황, 지리적 여건 등을 포함하여 용도지역 및 지목 현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적정 규격의 도면 등에 표기하여야 함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지역 표시하고 해당지역 보전여부 제시	

협의회위원	심 의 의 견	비고
최○영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동·식물상 조사('15. 하절기에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동·식물상 조사시 문헌(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에 의해 사업지역과 인접지역에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정밀조사 실시 - 자연환경현황, 지리적 여건 등을 포함하여 용도지역 및 지목 현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적정 규격의 도면 등에 표기하여야 함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지역 표시하고 해당지역 보전여부 제시 - 생물적조사(동·식물)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계절 및 서식여건을 고려하여 현황조사 실시검토를 요함 - 동식물상 조사에서 겨울철새 현황이 중요함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철새도래 영향여부 검토 - 사업지구 내 조류와 양서류 서식지확보 방안 검토 필요 - 동식물상 조사시 불빛, 공해 등으로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분석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아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누○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o 주변의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기 바람.	
	2. <b>토지이용구상안</b> o 의견 없음.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및 유지외의 대안의 제시는 불가능하므로 추가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o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자연훼손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6. 기타 o 의견없음.	